



: 2021-04-0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49390 손해배상(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이학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윤희, 김민후, 이근동

변 론 종 결 2021. 1. 21.

판 결 선 고 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021-04-06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명시적 일부 청구).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내용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1) 1997. 11.경 소외 C은 자신이 게임회사로부터 테스트에 필요한 음악 제작을 요청받았는데 실력이 부족하니 원고에게 대신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당시 C은 'D'라는 게임을 개발 중인 회사의 개발팀장인 소외 E가 자신의 친구인데, 향후 그 회사에서 게임음악팀을 만들어 꾸릴 계획이고 그 팀을 자신이 맡을 수 있으니 일이 잘 되면 메인 작곡자로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를 설득하였다. 원고는 당시 프리랜서로 음악 일을 하던 시기였는데, C의 위 제안이 괜찮다고 생각했으므로 1997. 11.부터 12월경 서울 F 소재의 C 작업실에 가서 반나절 작업 끝에 음악을 만들어 'G'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

2) 원고는 뒤늦게 위 1)과 같이 작곡한 'G' 음악이 'D'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 등이 수익을 얻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18. 1. 10. 'G'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1)과 같이 작곡한 'G' 음악을 원고의 허락 없이 이용함으로써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원고의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



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 10.에 이르러 'H'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을 창작연월일을 'I일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J)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기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한 음악저작물의 파일은 원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저작권 등록 무렵에 인터넷에서 D 배경음악 미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오디오 파일로 변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것임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원고는 최초 C의 컴퓨터로 작업한 직후 음악 파일의 복사본을 받았는지 추후에 메일로 받았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작곡한 음악 파일의 복사본을 C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분실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음악이 실제로 I일자 작곡된 것임을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창작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본문),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같은 항 단서), 이 사건에서 저작권 등록으로 인한 추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이 외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1997. 11.부터 12월경 'G'라는 제목의 음악을 작곡하였고 이것이 D 게임의 배경음악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2021-04-06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이진화

판사 이태웅